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53호)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하고자 「관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주요 내용

1.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조정 (안 제9조의3)

- 관세를 환급하거나 총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 → 연 1천분의 12로 인하

* **적용시점** : ‘부칙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 (안 제46조제2항)

- 정부 이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제적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할 서류의 종류와 이를 확인·발급하는 주체 명확화
 -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 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3.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한시 확대 (안 제46조제4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50% → 70%로, 중견기업의 경우 30% → 50%로 확대

II. 의견 제출

○ 제출 기한: 2021년 3월 3일

○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yh9778@korea.kr
- 전화번호: 044-215-4411
- 팩스: 044-215-8075

III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Contact



김찬란 관세전문가

T 02-6011-3026
E clkim@esein.co.kr



남근혜 컨설턴트

T 02-6011-3076
E khnams@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